

—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—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·시행(2004.12.18)으로 재난기구 신설 및 여유기구 설치 등 법령개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행정수행 역량강화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고
-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일부의 통·폐합 및 명칭변경을 일부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신 설 : 재난안전과(1과 4담당)
- 조 정
 - 읍면동기능전환팀(한시기구) → 혁신정책담당관(1과 4담당-여유기구)
- 명칭변경
 - 기획담당관 → 기획예산담당관
 - 경제진흥과 → 과학경제과
 -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→ 박대통령기념사업단

4. 참고사항

- 행자부 자제12200-247('03.5.9)호의 표준정원시행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1884('04.3.6)호의 200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
- 경북도 자치행정과-5358('04.7.2)호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
- 경북도 자치행정과-10011('04.12.20)호의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